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회)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국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국내 법인을 우선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한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897호, 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됨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기준을 정하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하는 방법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전문기관에 대한 출연사업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에 포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제2조, 제13조의2)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에 포함
-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 범위 확대에 따라, 공공기관 대상 개인

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됨을 명시

나. 국내대리인 지정기준 및 관리·감독 의무 구체화, 관련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제32조의3, 제63조, 별표2)

-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기준 마련(법인의 대표이사 임면 또는 임원 선임 100분의 50 이상, 법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30 이상)
-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내용을 명확화(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점검,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여부 확인, 연 1회 이상의 교육)
-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국내 법인 중 국내대리인 미지정 또는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미이행시 2천만원, 국내대리인의 성명·주소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포함시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 마련)

다. 전문기관에 대한 출연사업의 위탁근거 정비(제62조)

-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 업무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2025.5.30. ~ 2025.7.9.) 진행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제32조의3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3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국내대리인이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의 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여부의 확인
3.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교육

제62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11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자료제출 및 평가에 관한 업무
5. 법 제13조 각 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

별표 2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허. 법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법 제75조 제3항 제3호	2,000		
고. 법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 제4호	2,000		
노. 법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 9호의2	200	400	8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파일을 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등 위반행위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에 비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한 경우
- 6) 위반행위자가 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거나 자율적인 보호 활동을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7)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 8)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정보주체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기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1호	100 200	200 400	400 800
나. 법 제16조제3항·제22조제5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호	600	1,200	2,400
다. 법 제2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2호	600	1,200	2,400
라. 법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이나 이용·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3호	600	1,200	2,400
마. 법 제21조제1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4호	600	1,200	2,400
바. 법 제21조제3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	법 제75조 제4항제2호	200	400	800

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은 경우				
사.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법 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3호	200	400	800
아. 법 제23조제2항·제24조제3항·제25조제6항(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의4제1항·제29조(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5호	600	1,200	2,400
자. 법 제23조제3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6호	600	1,200	2,400
차. 법 제24조의2제1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7호	600	1,200	2,400
카. 법 제24조의2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8호	600	1,200	2,400
타. 법 제24조의2제3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9호	600	1,200	2,400
파. 법 제25조제1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0호	600	1,200	2,400
하. 법 제25조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1호	1,000	2,000	4,000

거. 법 제25조의2제1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1호	600	1,200	2,400
너. 법 제25조의2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2호	1,000	2,000	4,000
더.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4호	200	400	800
러.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5호	200	400	800
머.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2호	600	1,200	2,400
버. 법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1호	400	800	1,600
서. 법 제27조제1항·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6호	200	400	800
어. 법 제28조의4제3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7호	200	400	800
저. 법 제28조의5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않거나 이를 회수·파기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3호	600	1,200	2,400

처. 법 제28조의8제4항(법 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4호	600	1,200	2,400
커.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8호	200	400	800
터. 법 제31조제1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9호	200	400	800
퍼. 법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2호	2,000		
허. 법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u>지정한 경우</u>	법 제75조 제3항 제3호	2,000		
고. 법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u>관리·감독하지 않은 경우</u>	법 제75조 제3항 제4호	2,000		
노. 법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의 <u>성명·주소·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u>	법 제75조 제4항제9호의2	200	400	800
도. 법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5호	600	1,200	2,400
로.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향평가를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6호	600	1,200	2,400
모. 법 제34조제1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7호	600	1,200	2,400

보. 법 제34조제3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8호	600	1,200	2,400
소. 법 제35조제3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9호	600	1,200	2,400
오. 법 제35조제3항·제4항, 제36조제2항·제4항 또는 제37조제4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10호	200	400	800
조.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않고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20호	600	1,200	2,400
초. 법 제35조의3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21호	600	1,200	2,400
코. 법 제36조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22호	600	1,200	2,400
토. 법 제37조제3항 또는 제5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23호	600	1,200	2,400
포. 법 제37조의2제3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24호	600	1,200	2,400
호.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11호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	200	400
2)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	400	800

구.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출입·조사·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12호	200	400	800
누. 법 제63조제1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25호	300 600	600 1,200	1,200 2,400
두. 법 제63조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26호	600	1,200	2,400
루.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27호	600	1,200	2,4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6. <u>「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u>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기준·방법·절차 등)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기준·방법·절차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에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u>	3. <u>그 밖에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u>

제32조의3(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자의 범위) ①·② (생략)
<신설>

<신설>

제32조의3(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자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1조의2제2항제2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1. 법인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
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을 출자한 경우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국내대리
인이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
한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의 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
한 개선 여부의 확인

3.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대한

제62조(업무의 위탁) ① 삭제 ② (생략) ③ 보호위원회(제10호의 경우 보호위원회 외의 지정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에서 같다)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4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략) 4. <u>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u> 5. <u>법 제13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u> 6. ~ 11. (생략) ④·⑤ (생략)	<u>연 1회 이상의 교육</u> 제62조(업무의 위탁)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법 제11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자료제출 및 평가에 관한 업무</u> 5. <u>법 제13조 각 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u> 6. ~ 11.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3057